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마약류, 원료물질, 임시마약류 등에 대하여 매매의 알선뿐 아니라 유인·권유 행위도 금지함(안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, 제4조제1항제1호, 제5조의2제5항제2호).
-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되,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함(안 제3조제12호).
-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,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품목별로 수출입 허가 또는 제조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함(안 제3조제13호 신설).
-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 생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, 마약류중독자 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함(안 제51조의2).
-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, 해당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1조의7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 제51조의2는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해서 현행법 제51조의2제2항¹⁾의 자료 또는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보는 주민등록번호, 범죄경력,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.
- 현행법이 기존의 마약류통합정보 관리와 관련하여 벌칙 규정²⁾을 두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춰,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며,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정보가 유출·오용·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 규정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음.

1) 제51조의2(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)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,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)할 수 있다.

1.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
2.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로서 이 법에 관한 정보
3. 제40조(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)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관련 정보로서 건강에 관한 정보
4. 제40조의2(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)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이행실적
5. 이 법을 위반하여 「형사소송법」 제247조(기소편의주의)에 따라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

2) 제61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0.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

제62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3. 제11조의6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 중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

의 결 안	수 정 의 건
<신 설>	제51조의2(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 재활사업) 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한 용역·연구·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수행하였던 사람 및 제7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.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제61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신 설>	제61조(벌칙) ① ----- ----- ----- 10의2. 제51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
제62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신 설>	제62조(벌칙) ① ----- ----- ----- 4. 제51조의2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업무상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

(전문위원 이 은 정)